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64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남인순・황정아・박희승

이개호 · 김 윤 · 허종식

김남희 • 이기헌 • 송옥주

염태영 · 김영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있음.

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, 전전년도 보험료 수

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 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8 조의2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의2의 제목 중 "정부지원"을 "정부부담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"을 "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"으로, "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"를 "부담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원된"을 "국가가 부담한"으로 한다.

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u 첫 게 기 세 기 기		
보험재정에 대한 정		
) <u>전전</u>		
료 수입액의 100분의		
<u>17에 해당하는부담한다</u> .		
구 같음)		
<u>국가</u>		
.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④ (현행과 같음)		
45호 국민건강보험법		
일부개정법률 부칙		
<u><삭 제></u>		